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2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 나.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제1항)
- 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8. 10. 25.~ 11. 14.)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

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어려울 경우</u> 4.5. (생략) ③ (생략)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신설></p> <p>(생략)</p> <p><신설></p>	<p>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u>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u>시장은 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u> ③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u></p>

현행	개정안
<p><u>제14조·제15조</u> (생략)</p>	<p><u>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p> <p>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p> <p><u>제15조·제16조</u>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정용운(02-2133-3538)